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5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복기왕 · 최혁진 · 이상식
어기구 · 정준호 · 김영환
김승원 · 조계원 · 김남희
이강일 · 박용갑 · 한준호
김우영 · 정태호 · 한병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운전자의 급증과 더불어 인지기능 저하, 반응시간 지연 등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조작 오류 기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36% 증가하였고, 특히 정지·출발·주차·후진 등 저속 상황에서 발생하는 '페달 착오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국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 중 약 24~30%가 인지·판단·조작 기능 저하로 인한 실수형 사고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동일한 추세가 관측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또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의 법적 근거가 전무

한 실정임. 이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교통안전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함.

반면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인지기능 검사와 상황 판단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고위험군에게는 안전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시행 중임. 영국·독일 등도 고령층 대상 기능검사를 강화하거나 조건부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장치 장착 시 검사주기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동차 의존도는 OECD 국가 중 높은 편으로, 단순한 면허 제한이나 운전금지는 이동권 침해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위험군을 과학적으로 선별하고, 안전장치 장착을 조건으로 운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맞춤형 면허관리 체계가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고령운전자(75세 이상)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며, 동 장치를 부착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5호, 안 제80조의3, 제87조제5항, 안 제50조의4 신설 및 안 제148조의3, 제152조, 제

160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7에 따른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말한다.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3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80조의3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기준·방법 및 등록 기준·등록 절차, 제4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시·도경찰청장은 고령운전자(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부여하거나 기존 운전면허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로 전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하거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

허로 전환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발급·전환·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갱신하여 발급 받는 시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건부 운전면허는”을 “운전면허,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으로 한다.

제148조의3제1항 중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
2. 제5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
1.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
2. 제5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

제15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5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6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

사받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4.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4. (현행과 같음) 35.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u>「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u> <u>호의7에 따른 페달오조작방</u> <u>지장치를 말한다.</u> 제5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 조의3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 하려는 경우 페달오조작방지장 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제80조의3에 따라 페달오조 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은 페달오조 작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

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기준·방법 및 등록 기준·등록 절차, 제4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3(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시·도경찰청장은 고령운전자(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부여하거나 기존 운전면허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로 전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하거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로 전환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 ④ (생략)
<신 설>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발급·전환·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

① -----
-----운전면허, 폐달오조작방
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는-----

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 23. (생략)

② ~ ④ (생략)

제148조의3(벌칙)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handwriting practice.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venly spaced from top to bottom. Each row consists of a single continuous line of small dashes,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 •

1. ~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8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
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u><신 설></u>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 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 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u><신 설></u> <u><신 설></u> ③ (생 략)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u>효용을 해친 자</u> 2. 제5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u>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해체·</u> <u>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u> <u>효용을 해친 자</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u>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u> <u>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u> <u>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u> <u>을 운전한 자</u> 2. 제5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u>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해체·</u> <u>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u> <u>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u> <u>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제152조(벌칙) ----- ----- -----
--	---

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2. (생략) <u><신설></u>	-----. 1. ·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제5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u> 2. ~ 6. (현행과 같음) 제160조(과태료)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u> ② ~ ④ (현행과 같음)
2. ~ 6. (생략)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